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운항증명(AOC) 검사과정에서 실시하는 비상탈출시범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탈출시범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절차를 마련
(안 제3권제27장 2. 바.)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안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권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7장 2.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탈출시범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비상탈출시범이 포함된 모든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권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7장 비상 탈출, 착수 절차, 시 범의 평가</p> <p>2. 일반</p> <p>가. ~ 마. (생략)</p> <p><u>바. (신설)</u></p>	<p>제3권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7장 비상 탈출, 착수 절차, 시 범의 평가</p> <p>2. 일반</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u>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탈출 시범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비 상탈출시범이 포함된 모든 검사 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 다.</u></p>